



의안번호	제 2 호	보 고 사 항
보 고 년 월 일	2026. 5. 26. (제 4 회)	

ISSB 4월 주요 논의내용 및
회의결과 보고
(ISSB Meeting April Update)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회의안건

제 출 자	담당자: 권영리 선임연구원 이유진 선임연구원 검토자: 윤나영 팀장
제출년월일	2026. 5. 19.

1. 보고주문

- '26.4월 진행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회의의 주요 쟁점 사항을 보고

2. 보고이유

- ISSB는 '26.4월 회의에서 ①신규 기준제정 프로젝트, ②IFRS S1 및 S2 이행지원 사안을 다룸
 - 이에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은 ISSB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을 보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검토보고서' 참조

ISSB 4월 주요 논의내용 및
회의결과 보고
(ISSB Meeting April Update)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2026. 5. 19.

< 목 차 >

I. 개요	5
II. 회의안건 및 결과요약	5
III. 향후 일정	39
붙임	
1. TNFD 자료 발취	40
2. 주요 기준 개요	42
3.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정의	43
4. 연구 및 아웃리치 세부 내용	45

I 개요

□ ISSB는 '26.4월 회의에서 다음 안건을 논의함

- ① 자연 관련 공시(AP3)
- ② IFRS S1 및 IFRS S2 이행 지원(AP9)

II 회의안건 및 결과요약

1 자연 관련 공시

가. 안건 주요내용

AP3A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위치 기반 정보

- (목적)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위치 기반 정보(location-specific information)를 논의하고 스태프 분석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함
 - ISSB는 이번 회의에서 스태프 권고안을 심의하고 의결(vote)함

1. 배경

- (배경) ' 26.1월 ISSB 회의에서 스태프는 위치 기반 정보를 포함한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정보 영역을 식별함
 - IFRS S1은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설명 시 위치를 고려할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연 관련 공시 맥락에서는 다음의 결정을 위해 추가 요구 사항 또는 지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어떤 위치 기반 정보를 공시할 것인지
 - 위치 기반 정보의 세분화 수준 및 통합 방법
- ' 26.3월 ISSB 회의에서 다음을 잠정적으로 결정함
 - 식별된 정보 영역(위치 정보 포함) 맥락에서 제안이 필요한 산업전반 지표가

있는지를 검토하되, 추가적인 산업전반 지표 개발은 수행하지 않을 것

- 자연 관련 목표 및 관련 위치 기반 정보 공시에 대해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

2. 스태프 권고안

□ 스태프는 다음을 권고함

- ① 기업의 자산 및 사업활동의 위치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데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

* '추가(incremental)'의 의미는 자연 관련 목표에 특화된 것으로,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지침에 추가되는 공시 요구사항 및 지침을 의미함

- ② **핵심요소 전반에 걸쳐** 위치 기반 정보 공시에 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해당 지침에 적절한 **세분화 및 통합 수준 판단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 ③ ① 자연 관련 위험에 취약하거나, ② 자연 관련 기회와 정합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비율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
- ④ ③의 공시에 대해 **비례성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기업이 보고일 현재 이용가능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활용하도록 할 것

3. 연구 및 아웃리치에서의 발견사항

3.1 위치(location)의 중요성

□ **(위치 기반 특성)**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는 기업과 자연환경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위치 기반 특성을 가짐

-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서 자연자원,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는 동시에, 활동 및 산출물을 통해 이에 영향(affects)을 미치는 이중적 특성을 보유함

- 이러한 의존성 및 임팩트는 자연자원의 보전·재생 또는 훼손·고갈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음

- **(위치와 위험 및 기회 간 연계)**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는 자연자원,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의 특성과 밀접히 연계되며, 이는 자원이 위치하거나 조달되는 지역의 특성에 의해 좌우됨
 - 기업의 자연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의존성 및 임팩트는 대체로 특정 위치에서 발생하므로, 관련 위험 및 기회 또한 해당 위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물 부족, 생물다양성 민감도, 생태계 훼손 정도 등은 기업이 운영하거나 자원을 조달하는 위치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위험 및 기회는 행정적 경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동일 관할권 내에서도 생태학적 특성에 따라 위험 노출 수준이 상이할 수 있음

3.2 투자자 정보 수요

-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특정 위치 또는 사업장(site-specific) 수준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위치 기반 정보가 기업의 관련 위험 및 기회 평가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함

구분	내용
연구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	
투자자가 요구하는 위치 기반 정보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우선순위, 기초 가정 및 한계를 이해하기 위한 서술적 정보 • 기업 운영 위치에 대한 지리적 데이터(자산 유형 및 활동 포함) •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위치 기반 정보
세분화 수준에 대한 투자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세분화된 정보는 유용하나, 과도한 세분화는 핵심 정보를 흐릴 수 있음 • 적절한 세분화 수준은 산업, 기업 규모, 규제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의 판단이 중요함
현재 보고 관행에 대한 투자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위치 기반 정보는 기업 공시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함 • 특히 가치사슬, 특정 위치 및 생태계 관련 정보의 공백 등 데이터 커버리지의 불균형이 존재함
위치 기반 정보 활용 시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기반 정보와 기업의 전략 및 전망 간 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낮음 <p>⇒ 이에 따라 투자자는 공공정보 및 제3자 데이터(산업 수준 대리지</p>

구분	내용
	표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세분화 수준이 낮고 기업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된 내용	
투자자가 요구하는 위치 기반 정보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는 기업의 직접 운영뿐 아니라 가치사슬 활동이 물 스트레스 지역,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 원주민·지역사회 거주 지역 등 '민감 위치'에 위치하거나 근접하는지, 그 정도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함 또한 해당 지역과 관련된 매출, 자산, 운영 및 가치사슬 활동 등 기업 전망과 연계된 정량적·정성적 정보의 유용성도 강조됨
기업 프로세스 관련 정보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관련 위험 노출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판단 기준, 지리적 경계 설정 방식, 데이터 출처 등에 대한 정보 중요(예: 환경적으로 민감한 위치를 식별하는 기준)
위치 기반 정보의 세분화 수준에 대한 추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권 단위 정보만으로는 위험 노출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다 세분화된 정보가 필요함 다만 단일의 최적 세분화 수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산업 특성 및 기업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 일부 산업(초기 단계 산업, 복잡한 공급망 등)에서는 세분화된 정보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 정보 또한 유용함
투자자의 활용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기반 정보를 활용하여 고위험 지역 식별(스크리닝, 실사, 공간 분석 등) 기업과의 맞춤형 소통, 가치평가 모델 반영, 물리적 위험 평가, 시나리오 분석, 규제 매핑, 좌초자산(stranded asset) 분석, 가치사슬 위험 및 기회 평가 등에 활용

* ISSB SRG, ILAG, TNFD 포럼 대상 설문조사

3.3 TNFD 자료 개요 - 위치 기반 정보

□ TNFD 권고안 및 LEAP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위치 기반 정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참고

구분	내용
TNFD 권고안	
우선순위 위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ategy D는 기업이 우선순위 위치(Priority locations)에 해당하는 자산 및 활동의 위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직접 운영뿐 아니라 가능한 경우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사슬까지 포함함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순위 위치는 '중요한 위치'(중요한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식별된 위치)와 '민감한 위치'(생태적으로 민감한 기준을 충족하는 위치)로 구분됨
공시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정보는 목록(list) 또는 공간 맵(spatial map) 형태로 공시하며, 구체적인 세분화 수준은 규정하지 않음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한 위치 정의 방법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위치 식별 프로세스 - 지리적 세분화 수준 및 통합 여부와 그 근거
타 공시 요소 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k Management A(i) 및 A(ii)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의존성 및 임팩트 식별·평가 과정에서의 위치별 세분화 수준 공시를 요구함 • Strategy A 및 Metrics and Targets B는 위치 정보와의 연계를 권고함 • Metrics and Targets A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평가·관리에 활용되는 지표(위험 취약성 지표 포함) 공시를 요구함
LEAP 접근법	
'Locate' 단계- 위치 기반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AP 접근법은 'Locate' 단계에서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의존성 및 임팩트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는 기업의 활동이 특정 장소에서 자연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전제로, 지리적 요인을 고려한 이슈 식별 및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이 과정에서 기업은 ①직접 운영(operations)과 가치사슬이 어떠한 생물군·생태계와 상호작용하는지, ②해당 활동이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도록 권장됨
핵심 위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위치' 개념을 통해 기존 위험관리 체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높은 수준의 물리적·전환 위험 및 기회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또한, '영향 지역'(area of influence) 개념을 통해 기업의 자연에 대한 임팩트와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사업장 범위를 넘어 확장될 수 있음을 설명함 • 아울러 공급업체가 정확한 위치 정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공급권'(supply shed) 개념을 활용하여 공급자 집단이 위치한 지역 단위로 위치를 식별할 수 있음을 제시함
비례성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직접 운영 및 가치사슬 활동의 구체적 위치와 '영향 지역'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함 • 다만, 이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위치 정보를 비례적으로 식별·활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지역 또는 시장 단위 정보로도 충분할 수 있음

3.4 공시 현황 및 기준 요구사항

□ (현행 공시 관행) 위치 기반 정보와 관련된 공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분석 내용
전반적 공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자산 및 활동의 위치 정보를 웹사이트, 지속가능성 보고서 또는 기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를 통해 공시함 • 다만 해당 정보는 주로 소유·운영하는 자산의 위치 중심으로 제공되며, 자산 또는 사업장 수준까지 세분화된 경우는 제한적임

구분	분석 내용
산업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사업장 수준 위치 정보의 가용성은 산업별로 상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 에너지, 일부 제조 및 운송 산업에서는 비교적 정보가 풍부한 반면, 농업·임업·어업 등 자연 의존성 및 임팩트가 높은 산업에서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가치사슬 관련 위치 정보는 투자자에게 거의 제공되지 않음
TNFD 적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TNFD 권고사항을 적용한 기업 중 다수는 Strategy D를 활용하여 우선순위 위치 관련 자산 및 활동 정보를 공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TNFD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 기업의 63%, 추가 분석 대상 보고서의 47%가 해당 권고사항을 반영함
공시 내용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기업은 물 스트레스 지역 인근 사업장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우선순위 위치의 전체 목록 또는 공간 맵(spatial map), 가치사슬 위치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제한적임 또한 공시는 주로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제공되는 경향이 있음
향후 공시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기업은 LEAP 평가 고도화할 계획을 공시하며, 공시 미흡의 주요 사유로 TNFD 적용 초기 단계를 언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6년 TNFD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5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보다 완전한 Strategy D 공시(목록맵 포함)가 증가하는 추세임
타 기준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RS 및 GRI 기준 등 타 기준에서도 위치 기반 정보 관련 요구사항이 존재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참고

□ (ISSB 기준 및 가이드نس) IFRS S1 및 S2의 위치 정보 관련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공시 요구사항
IFRS S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별 정보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을 통해 위치 정보 공시 필요성이 내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내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위치(지리적 영역, 사업장 등) 설명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련 상충관계 공시(예: 입지 선정 시 환경·사회 영향) 위험 및 기회 측정과 성과 모니터링 지표 공시 중요 정보 식별 시 지리적 기준에 따른 정보 세분화 필요성 명시 또한, 위치 정보는 다음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해당 위험 및 기회가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IFRS S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과 같이 위치 정보를 반영한 요구사항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나리오 분석 수행 시 적용 범위(운영 위치, 사업부 등) 공시 목표 적용 범위(전체 기업 또는 특정 지역·사업부 등) 공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위치 고려
보완 지침 및 기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S1 부속지침은 CDSB 생물다양성 가이드언스를 참고하여 위치 특성을 반영한 공시 가능성을 제시함 SASB 기준은 물 관리, 생태학적 영향과 관련하여 위치 정보를 반영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의 취수 비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내 사업장 범위 등 ISSB는 SASB 기준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위치 정보 관련 지표 강화 방안(예: 물

구분	공시 요구사항
	관련 위험이 집중된 사업장 위치 공시 요구)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자연 관련 위험 평가에서 위치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투자자 의견을 반영한 것임

4. 스태프 분석

(요약) 스태프 분석은 다음을 고려함

- 위치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에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 위치 기반 정보가 핵심 공시 영역 전반에 걸쳐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와, 의사결정 유용성 확보를 위한 적정 세분화 및 통합 수준 검토
- 위치 특정 지표를 제공해야 하는지, 제공한다면 어떠한 지표를 제공해야 하는지

(분석 전제) 분석 전반에서 ISSB 기준(SASB 기준 포함)은 재무적 중요성에 기반한 공시를 요구하는 유일한 체계라는 점을 전제로 분석을 수행함*

* 반면 GRI 기준(임팩트 중요성), ESRS(이중 중요성), TNFD 프레임워크(중요성 중립 접근) 등은 기준 별 목적에 차이가 존재함

⇒ 이에 따라, ISSB 기준에서 요구되는 위치 기반 정보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한정되어야 함

4.1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에서의 위치 고려

(위치의 중요성) 연구 및 아웃리치 결과, 위치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확인됨

- 이는 위치의 특성이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 노출 여부와 그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투자자와 TNFD 권고안 등에서도 이를 공통적으로 강조함

- TNFD LEAP 접근법의 ‘Locate’ 단계 또한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자연 관련 이슈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권고함

(IFRS S1과의 정합성) 위치를 고려한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은, 기업과 자연환경 간 상호작용을 통해 위험 및 기회를 발생한다는 IFRS S1 개념과도 일관됨

○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이 **지역화된 특성(localised character)**을 가진다는 점에서, 위치는 산업 및 가치사슬과 함께 주요 고려 요소로 볼 수 있음

□ **(지침 제공 필요성)**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은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중요 정보 식별의 전제조건임

⇒ 이에 따라, 스태프는 기업의 자산 및 사업활동의 위치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 해당 지침은 **IFRS S1의 기존 요구사항과 TNFD 자료의 개념**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

-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자체 운영 및 가치사슬 전반에서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발생되는지
- 위치의 특성이 자연자원·생태계·생태계 서비스의 수준과 가용성, 나아가 경제성에 영향을 미쳐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유발하는지
-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의 개념과, 이에 인접한 자산 및 운영이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노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
- 기업의 영향권 개념과, 임팩트 발생 위치를 고려할 때 해당 개념이 중요한 이유와 이러한 영향이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4.2 핵심요소 내 위치 기반 정보 및 세분화

□ **(위치 기반 정보의 관련성)** 위치 기반 정보는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노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이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지역화된 특성**에 기인하며, 투자자들이 대응 방식·우선순위·가정 및 재무적 영향 등을 이해하기 위한 위치 기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기 때문임

□ **(핵심요소와의 연계)** 위치 기반 정보는 다음 예시와 같이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IFRS S1의 핵심요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설명하는 경우(IFRS S1 문단 30(a))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경우(IFRS S1 문단 32)
- 자연 관련 위험의 성격, 발생가능성 및 영향의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시

하는 경우(IFRS S1 문단 44(a)(iii))

-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목적 달성을 위한 진척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업이 설정한 목표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IFRS S1 문단 51)

⇒ 이에 따라, 스태프는 기업이 핵심 공시 영역 전반에서 어떤 위치 기반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ISSB가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

* 이러한 접근은 ISSB가 '26.3월 자연 관련 목표와 관련된 위치 정보에 대해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로 잠정 결정한 방향과도 개념적으로 일관됨

○ 이는 투자자가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노출과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세분화 및 통합)**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관할권 수준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선호하나, 정보는 비례적이어야 하며 과도한 세분화로 인해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는 안 됨

○ 즉, 적절한 세분화 수준은 정보의 유용성과 실무 가능성 간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

○ 아울러, 스태프는 특정 지리적 범위나 세분화 수준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거나, 위치 정보를 특정 방식으로만 세분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함

- 또한 관할권 관점(jurisdictional perspectives)과 생태학 관점(ecological perspectives) 중 어느 하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접근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봄

- 일부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 정보보다 특정 위험에 노출된 매출·자산 비율 등의 통합 정보가 더 유용할 수도 있음

□ **(지침 제공 필요성)** 스태프는 IFRS S1이 정보의 세분화 및 통합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특화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특히 위치 기반 정보 공시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복잡한 가치사슬을 고려할 때 중요성 판단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봄

- 추가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위치 정보는 반드시 사업장 수준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지역·국가 수준의 정보도 적절할 수 있음
 - 과도한 세분화는 지양하고, 유사 특성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음
 - 사업장·자산 수준 정보 필요성은 기업 규모 및 운영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IFRS S1의 비례성 메커니즘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4.3 지표 공시

- **(투자자 정보 수요)** 투자자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정성적·정량적 정보를 모두 요구하며, 여기에는 위치 기반 정량적 정보도 포함됨
 - 특히 물 스트레스 지역,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 등 고위험 지역 내 또는 인접한 자산·활동 규모, 매출 및 자산 등에 관한 지표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ISSB 기준 내 지표)** IFRS S1은 위험이 집중된 위치에 관한 정보 공시를 요구하며, 기업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위치 기반 지표가 포함될 수 있음
 - IFRS S2는 기후와 연계된 자연 관련 위험과 관련하여, 취약한 자산 및 활동의 금액·비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SASB 기준을 참조함으로써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위치 관련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음
 - **(추가 지표)** 스테프는 위치 정보의 중요성(정량적 정보 포함)을 고려하여 특정 지표의 공시 필요성을 검토함
 - 일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는 IFRS S2 적용을 통해 정량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나, 생물다양성 등 비기후 영역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TNFD 핵심 글로벌 지표(C7.0, C7.1) 또한 자연 관련 위험에 취약한 자산·부채·수익·비용의 금액 및 비율 공시를 요구함
- ⇒ 이에 따라, 기후와의 연계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에 대해 취약하거나 정합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비율 공시의 필요성이 제기됨

○ 위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이 자연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취약하거나 정합되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연 관련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을 특정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세분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기업은 IFRS S1의 통합 및 세분화 원칙과 추가 지침을 적용하여, 관련 자산 또는 사업활동을 식별하고, 세분화 여부 및 수준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세분화는 위치뿐만 아니라, 위험 유형, 전환·물리적 위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음

□ **(비례성 메커니즘의 적용)** 결론적으로, 스태프는 비례성 메커니즘을 반영하여 자연 관련 위험에 취약하거나 기회에 정합되는 자산·활동의 금액 및 비율 공시를 권고함

○ 이는 IFRS S2와 정합되는 접근으로, 자연 관련 공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AP3B&C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맥락에서 원주민, 지역 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정보

□ **(목적)**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맥락에서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및 참여 관련 공시에 대한 스태프 분석과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ISSB 위원의 의견을 요청*함

* AP3B에서 연구 및 아웃리치 결과를, AP3C에서 스태프 분석 및 권고안을 제시함

○ ISSB는 이번 회의에서 스태프 권고안을 심의하고 의결(vote)함

1. 배경

□ **(배경)** ISSB는 '26.1월 회의에서 기업이 IFRS S1 및 S2를 이미 적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자연 관련 기준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연구 단계에서 확인된 원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투자자 정보 수요 및 기업 전망 영향)** 투자자의 명시적 관심은 제한적이었으나, 원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됨
 - 이에 따라 해당 정보 영역을 기준제정에 포함할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기존 기준 검토)** IFRS S1 및 S2는 해당 주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나, SASB 기준은 일부 산업에서 '지역사회 관계 및 원주민 권리' 및 '공급망 관리' 주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CDSB, TNFD 등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스태프는 기준제정 단계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 분석 필요성을 제시함

- 자연 관련 맥락에서 원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가 기업 전망 및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중요성
- 이러한 상호작용이 기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의 명확성
- SASB 기준을 통한 해당 영역의 반영 수준
- 기준제정에 포함의 타당성과 포함 시 적절한 공시 영역

2. 연구 및 아웃리치에서의 발견사항

□ **(개요)** IFRS S1에 따르면 기업은 가치사슬 전반에서 자원 및 관계에 대한 의존성과 임팩트를 통해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노출되며, 이는 이해관계자·사회·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함

○ **(상호작용)**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호의존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며, 기업의 자연자원·생태계·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과 임팩트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형성함

○ **(연계성)**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는 동일 자원에 의존하거나 권리·이해관계를 보유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음*

* 관련 정의 및 설명은 붙임 3 참고

- 이러한 영향은 기업 운영 지역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 등 물리적으로 떨어진 이해관계자까지 확장될 수 있음

○ 원주민 및 지역사회는 자연자원 관리, 전통지식 및 문화적 관행 등을 통해 기업의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와 밀접하게 연계됨

- 특히 토지·자원에 대한 권리(FPIC*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에 제약 또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자유롭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 **(영향 범위)** 전통적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이해관계자 또한 기업의 자연 의존성 및 임팩트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영향 범위는 인접 지역사회뿐 아니라, 오염 등의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사회까지 확대될 수 있음

2.1 기업 전망에 대한 영향

- 스태프는 기업과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이 기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 연구 및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함

* IFRS 재단 자문기구 협의 및 Shift의 연구 등 활용(붙임 4 참고)

- **(참여)**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참여(engagement)의 존재 여부 및 수준(quality)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참여가 부재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기업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초기 단계에서 식별하지 못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권리 침해, 자원 접근 제한, 허가 미취득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로 시위, 소송, 운영 지연·중단, 공급망 차질 등의 운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평판 훼손, 규제 강화, 자금조달 제약 등으로 이어져 현금흐름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반면, 효과적인 참여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이해와 관리 수준을 높이고, 관련 위험 완화 및 기회 포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이는 자원 접근 안정성 확보, 신규 수익 기회 창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Shift 연구에 따르면, 자연 의존성 및 임팩트는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유발

하는 주요 요인이며, 이러한 갈등은 참여의 존재 여부 및 수준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기업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원주민 권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자연자원 이용 또는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지역사회의 생계 및 복지에 중요한 생태계(토지담수해양)에 의존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특히 토지 권리가 불안정하거나 분쟁 상태인 경우)
- 대규모 초기 투자 또는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예 광산 파이프라인 태양광 발전 등 인허가 필요 사업)

○ 참여의 영향은 위치, 활동 유형 및 이들의 결합에 따라 달라지며, 가치 사슬 전반과 원거리 이해관계자까지 확장될 수 있음

- 또한, 생계·건강·고용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요인과 결합되어, 참여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화적 이슈로 확산되며 기업 전망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2 투자자 정보 수요

□ 스태프는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참여 포함)에 대한 투자자의 정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추가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함

* IIAG 및 SRG, TNFD 포럼 소속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행함

구분	아웃리치 결과
전반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투자자는 참여 관련 정보가 기업 전망과 관련성이 있으며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하다고 인식함 • 특히 토지 접근 또는 인허가 획득과 연계되는 경우, 현금흐름 및 프로젝트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주요 정보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는 다음 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민 영토 내·인접 위치에 따른 자연 관련 위험 노출 수준 및 관련 정량 지표(예: 인허가 리스크, 위험에 노출된 자본적 지출, 총당부채 등) - 참여의 존재 여부 및 수준, 참여 프로세스의 효과성과 FPIC 충족 여부 -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관리 프로세스 관련 정보 - 해당 프로세스의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 체계 통합 여부 - 참여 결과의 의사결정 반영 여부
맥락 의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는 위치, 산업, 지역사회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맥락 의존적 특성을 가지며, 공시의 중요성과 내용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원주민·지역사회 영토 내·인접 여부, 권리 인정 여부 - 산업: 자연 의존성 및 임팩트 수준

구분	아웃리치 결과
	- 지역사회 유형: 권리 보유 집단 여부 등
중요성 및 비례성 기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투자자는 해당 주제의 공시 포함에 동의하면서도, 중요성 및 비례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함 • 이에 기업의 위험 노출 수준에 따라 공시 수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존 기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SB 기준은 유용성 및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산업 범위, 가치사슬 반영, 위치별 세분화, 참여의 수준 정보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공시 범위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투자자는 해당 주제가 광범위한 사회적 위험 및 기회를 포함할 수 있다고 봄 • 자연 관련 공시는 자연 의존성 및 임팩트와 직접 연계된 참여로 한정하고, 그 외는 사항은 IFRS S1의 '연계된 정보'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3 타 기준 및 프레임워크 검토

- 연구단계에서 수행된 분석 결과, GRI 기준, ESRS, TNFD 권고안 등은 자연 관련 맥락에서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전략 및 프로세스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구분	분석 결과
ES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RS는 원주민 및 지역사회 관련 다음의 요구사항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환경 기준(ESRS E)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 요구 - ESRS E4: 생물다양성 공시 및 FPIC 고려 요구 - ESRS S3 '영향받는 지역사회: 원주민 영향 예방 대응 및 대응 정책 공시 요구(ESRS S3-1, UN 원주민 권리 선언 기반) - ESRS E4: 생물다양성 공시 및 FPIC 고려 요구 - 부속서 II: '영향받는 지역사회 및 원주민' 정의 포함
GRI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I 기준은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폭넓게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I 2: 이해관계자 범주, 참여 목적 및 접근방식 공시 요구 - 환경 기준(GRI 101, 102, 303 등): 원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 임팩트 대응 및 자원관리 공시 요구 - 부문별 기준(Sector Standards): 원주민 및 지역사회, 토지자원 권리와 관련된 추가 산업별 권고 포함 - 지역사회 '원주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용어 정의 포함
TNFD 프레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NFD 권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요구사항 6: 운영 및 가치사슬 전반에서 자연 관련 의존성 및 임팩트,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우려 및 우선순위를 반영한 참여 프로세스 공시 요구 - Governance C: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대응 과정에서 인권 정책, 참여 활동, 이사회 및 경영진 감독 관련 정보 공시 권고 (예: 국제 기준(UNGP, UNGRI)에 대한 기업의 약속, 참여 접근방식 및 결과, FPIC 확보 방식, 공정한 이익공유, 관련 정보의 보고체계 등)

구분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ategy D 직접 운영 또는 가능한 경우 가치사슬 전반에서 '민감한 위치'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및 활동의 위치 공시 권고(원주민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 지역 포함) - '지역사회' '원주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용어 정의 포함 • TNFD 추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지침 의미 있는 참여 수행 및 Governance C, 일반 요구사항 6과의 정합성을 갖춘 공시 준비를 지원 - LEAP 접근법 자연 관련 의존성 및 임팩트, 위험 및 기회 식별과 평가 전 과정에서 참여를 핵심 요소로 반영 - 산업별 지침: 일부 산업(예: 금속광업)에 대해 참여 관련 추가 고려사항 제시

2.4 IFRS 재단 자료 검토

□ **(IFRS S1)** IFRS S1은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전략 및 프로세스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 다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관리·감독 프로세스 공시는 요구되며, 자연 관련 맥락에서 참여 정보는 해당 요구사항 내에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
- IFRS 재단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주제를 보완적으로 다루고 있음

- SASB 기준 원주민 권리 및 지역사회 관계 관련 공시 주제 및 지표 포함
- CDSB 적용지침 물생물다양성 공시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거버넌스 및 정책 공시 권고
- IR 프레임워크: 기업의 가치 창출에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예: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
- IFRS Practice Statement 1: 전략 이행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자원 및 관계에 의존함을 설명

○ **(핵심요소)** 참여 정보가 중요할 경우 다음의 핵심요소에서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거버넌스 위험 및 기회 관리감독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통제 및 절차에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위험관리: 위험 및 기회 식별평가우선순위화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와 관련 정책
- 전략 참여 결과(또는 부재)에 따른 위험 및 기회의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과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 **(연계성)** IFRS S1은 투자자가 정보 간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요구함

-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 참여에서 발생한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고용생계건강 등과

의 연계

- 공시 간의 연계 참여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설명과 이를 나타내는 지표 간의 연계

- (타 기준 참조) IFRS S1에 따라 기업은 SASB 기준, CDSB 적용지침 등 기타 자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에는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공시 요구사항 또는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SASB 기준-공시주제 및 지표) SASB 기준('25.7월 및 '26.3월 개정 공개초안 포함)은 산업별로 원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공시를 포함함

구분	내용
공시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공시는 토지 권리 등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직접 연계되며, 그 외에는 경제환경사회적 요소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권리 및 이해관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포함함
운영 및 자산 중심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는 주로 기업의 운영자산과 연계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량적 지표 원주민 토지 내 또는 인근 운영에 따른 위험 노출면적, 매장량, 운영 지면 등- 정성적 지표 참여 프로세스, 실사 관행, 정책 준수 관련 거버넌스(다만 참여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까지는 포함하지 않음)
공급망 및 간접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산업(예: 가공식품농업)은 공급망 관리 맥락에서 참여 및 영향 정보를 포함함• 또한 물, 생태계, 오염 등 주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간접적 영향 및 관련 위험을 반영함
참조 프로토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SASB 기준은 원주민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의를 참조함
개정안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 응답자(투자자 포함)는 관련 공시 주제 통합에 동의하였으며, OECD-ILO 기준과의 정합성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참여 및 실사의 효과성, 주요 분쟁 및 해결기간 등에 대한 추가 정보 필요성이 제기됨• 일부는 관할권별 규제와의 정합성과 원주민 특화 공시 필요성을 제기함• 반면 특정 집단 중심 공시는 다른 공동체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적용을 위한 유연한 공시 접근 필요성이 강조됨

2.5 현행 보고 관행

□ 스테프는 자연 관련 공시 맥락에서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 및 참여 관련 공시 관행을 예비적으로 분석함

- (TNFD 권고안) TNFD 권고안에 부합하는 약 700개 기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 다수의 기업은 참여 관련 거버넌스 감독, 인권 정책 및 불만처리 메커니즘

을 공시하고 있음

- 다만 FPIC, 이익공유, 역량 강화, 장기적 관계 구축 등 ‘참여 수준’ 관련 정보는 절반 미만의 기업에서만 공시됨
- (SASB 기준) SASB 기준 기반 공시에서도 다수의 기업이 원주민 또는 지역사회와의 참여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3. 스태프 분석

- (접근방식) 스태프는 자연 관련 공시 맥락에서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참여 포함)에 관한 투자자 정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검토함
 - 연구 및 아웃리치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관리 및 기업의 전망과 관련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판단됨
 - 또한 이러한 정보 수요는 IFRS S1 요구사항 및 SASB 기준과 연계될 수 있음
 - (추가 지침의 필요성) 스태프는 IFRS S1의 기존 요구사항(특히, SASB 기준 참조 요구)이 참여 공시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함
 - 다만, IFRS S1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함
 -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맥락에서 해당 정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부족
 -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집단이 모두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맥락 부족
 - 참여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재
 - 반면 TNFD 권고안 및 SASB 기준은 해당 주제를 보다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련 공시 관행 또한 비교적 성숙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됨
- ⇒ 이에 따라 스태프는 투자자 정보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특히 참여 정보의 의사결정 유용성을 명확히 하고, 기존 요구사항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침은 TNFD 권고안 및 용어체계, SASB 기준의 산업별 지표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참여 관련 정보는 고용·건강 등 다른 지속가능성 이슈와 중첩될 수 있으므로, IFRS S1의 ‘정보 간 연계성’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추가 요구사항 미도입)** 스태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도의 공시 요구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참여 정보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와 중첩될 수 있음
- 특정 요구사항을 명시할 경우, 오히려 유용한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추가 지침은 기존 IFRS S1 요구사항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공시에 포함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요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지침은 위치, 산업, 지역사회 유형 등에 따라 상호작용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기업 간 비교가능성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투자자가 상황별로 차별화된 정보를 선호한다는 점과는 부합함

□ **(위치 기반 정보와 SASB 기준)** 연구 및 아웃리치 결과, 위치는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주요 고려 요소로 확인됨

- 특히 투자자들은 원주민 영토 내 또는 인접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위치 기반 정보를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함
- 다만, SASB 지표는 특정 유형의 위치와 연계된 자산 또는 활동 비중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세분화된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 안전 AP3A에서는 통합 및 세분화 정보 제공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본 주제 관련 지침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또한 SASB 기준 관련 연구 및 아웃리치 결과는 산업 범위 및 공동체 · 이해관계자 범위 측면에서 추가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함

□ **(범위 내 사회 및 이해관계자)**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는 각각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원주민 및 지역사회는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자원 접근과 관련된 특정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반면 이해관계자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자연 관련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거나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평판 리스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예: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 물 부족 문제)

□ **(관할권별 차이)**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접근방식은 관할권별로 상이함

- 일부 관할권에서는 원주민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나(예: 캐나다), 원주민만을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신흥국 등에서는 자연자원과 실질적 관계를 가진 집단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공식적 분류 체계가 아닌 관습적 체계에 기반함
- 또한 관련 법률 ·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공시 시 유의가 필요함

□ **(기준간 정의 차이)** 지속가능성 기준 및 프레임워크 간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는 일관되지 않음

- 연구 및 아웃리치 결과, TNFD 권고안, ESRs, GRI 기준, SASB 기준 등은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 또는 적용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스태프는 IFRS S1 및 SASB 기준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범위 및 참여 정보에 대한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유형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은 정보의 이해

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침은 TNFD 범주 및 정의를 참고하되, 관할권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이는 ESRS 및 GRI 기준과도 정합적인 접근임

- **(지침 적용 효과)** 해당 정보는 중요한 경우 IFRS S1에 따라 이미 공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추가 지침은 투자자 의사결정 유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별도의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 요구사항 내에서 적용되는 방식이므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4. 스태프 권고안

- **(지침 주요 내용)** 스태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 마련을 권고함
 - 자연과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설명할 것
 - 상호작용 및 참여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발생·대응과 기업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여, 위험 및 기회의 식별과 중요성 판단을 지원할 것
 - 투자자 정보 수요 충족을 위해 IFRS S1의 전략, 위험관리, 거버넌스 및 연계된 정보 관련 요구사항과 SASB 기준 지표의 적용 방식을 설명할 것
 - 산업 및 관할권별 사례를 포함한 공시 적용 사례를 제시할 것
- **(적용 범주)** 지침은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도록 하며, 해당 범주는 TNF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설명할 것을 권고함
- **(지침 적용 효과)** 용어 정의의 불일치 및 관할권별 차이를 고려하여, 관련 정보가 중요한 경우 기업이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 유형을 식별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함
- **(SASB 기준과의 연계)** 스태프는 ISSB가 SASB 기준 개선 과정에서 자연 관련 기준제정 프로젝트를 결과를 반영할 것을 권고함

- 특히 산업 범위, 포함되는 이해관계자 유형,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AP3D 기준제정 형식(Form of Standard-setting)

- **(목적)**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 및 지침을 담은 형식에 대한 스태프 분석과 권고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ISSB 위원의 의견을 요청함
 - ISSB는 이번 회의에서 스태프 권고안을 심의하고 **의결**(vote)*함
 - * 일반적으로 ISSB 의결이 요구되는 안건은 안건 서두에 해당 사실을 명시하나, 본 안건은 스태프 권고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의결 요청 사실을 서두에 안내하지 않음
- **(SSAF 피드백)** ' 26.3월 스태프는 SSAF 회원국에 ①자연 관련 요구사항의 개발 형태, ②자료의 지위(의무 여부), ③시행일(의무일 경우)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① 요구사항 개발 형태

- IFRS S1 및 IFRS S2 이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존 기준의 안정성 유지와 추가 요구사항 도입 필요성 간 균형을 통해 이행 및 도입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
- 일반목적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자연 관련 재무정보와 기후 관련 재무정보 모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일부 회원국은 중요성 부각을 위해 자연 관련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예: 독립 기준 개발)로 제시할 필요성을 제기함
 - 반면, 두 회원국은 자연 관련 정보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분절되는 접근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IFRS S1이 이미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 관련 추가 요구사항은 IFRS S1의 맥락 내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 자연 관련 요구사항을 IFRS S2의 일부로서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회원국은 자연 관련 정보가 기후를 초과하는 범위를 포함할 수 있으며

로 IFRS S2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반면, 한 회원국은 기후와 자연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IFRS S2와의 상호참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② 자료의 지위

- 일부 회원국은 의무화가 비교가능성 제고 및 의사결정 유용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평가함
- 한 회원국은 자발적 적용이 가능한 독립 기준서가 글로벌 기준선 개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함
- 한 회원국은 자발적 자료라 하더라도, 각 관할권이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요구사항의 실질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③ 시행일

- 두 회원국은 IFRS S1 및 IFRS S2에 대한 이행 혼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긴 이행기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 한 회원국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조기 적용 허용 시, 선도 기업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으며, 이외 기업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평가함

□ (스태프 분석) 스태프는 고려가능한 네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권고하기 위해, 요구사항의 ①지위, ②시행일, ③접근법별 장점 및 우려사항을 분석함

*1 IFRS S1 개정, IFRS S2 개정, 독립 기준서 제정, 실무서(Practice Statement)*2 개발

*2 IFRS 실무서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비의무적 지침 성격의 문서임. 한국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문서로 활용됨. 현재까지 발행된 실무서는 다음 두 가지임. IFRS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17.9월 공개), IFRS 실무서 1 '경영진설명서'(25.6월 개정)

① 자료의 지위

- (개요) 요구사항의 지위(비의무적(자발적) vs 의무적) 결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함

<접근법별 지위 적용 방식>

구분	비의무(자발적) 적용	의무 적용
① IFRS S1 개정	다음 두 가지 중 한 방법을 통해 자연 관련 요구사항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SB 기준에 대한 준수 문구 사용을 위해, 해당 요구사항을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해당 요구사항의 시행일을 미래에 결정 	통상 의무적용 대상임
② IFRS S2 개정		
③ 신규 독립 기준서 제정		
④ IFRS 실무서*	비의무(자발적) 적용 대상임	

* 자연 관련 요구사항을 실무서 형식으로 개발하는 경우 지위 결정 불필요

○ (지위별 장단점) 비의무 vs 의무 적용 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비의무(자발적) 적용	의무 적용
적용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적용 여부 선택 가능 IFRS S1·S2 준수문구 사용 시 반드시 자연 관련 요구사항을 다른 문서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 없음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용을 선택할 경우, 해당 적용 사실 공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일 이후, ISSB 기준에 대한 준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연 관련 위험·기회에 대해 중요한 정보 제공 필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S1·S2 도입 및 이행에 미치는 혼란을 완화 자연 관련 공시에 대한 접근방식을 확립함으로써 보고의 다양성과 분절을 축소하고, 의사결정 유용성과 비용효율성을 개선 기업·관할권이 IFRS S1·S2 이행 현황을 포함한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입의 비용-효익 평가 후 도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음 IFRS S1의 '의사결정 유용성 중심 접근'과 정합한 방식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간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비교가능성 확보 글로벌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연 관련 정보 제공 지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비교가능한 자연 관련 공시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실성을 낮춤 	
한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발적인 자료로서 제공되더라도, 관할권이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음 IFRS재단 및 기타 기관(투자자 등)이 기업의 자료 사용을 적극 장려할 수 있음 	

구분	비의무(자발적) 적용	의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적절한 시점에 협의를 거쳐 ISSB가 자연 관련 요구사항을 의무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지위로 개발 시 고려할 사항) 자연 관련 요구사항을 ‘자발적 지위’로서 개발할 경우, ISSB 기준 준수문구와 관련해 다음을 고려할 필요
 - (IFRS S1·S2 내에 포함) ISSB 기준에 대한 준수 선언을 위해 반드시 적용해야 할 요구사항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요구사항 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필요
 - (독립 기준서 개발) 자발적 IFRS 기준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IFRS 19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24.5월 발행)라는 선례가 존재하므로, 해당 기준서 문단 20의 준수 문구에 대한 요구사항을 참고할 수 있음

② 시행일

- (개요) 요구사항의 시행일 결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함
 - * (참고) 요구사항을 실무서 형태로 개발하는 경우, 실무서는 비의무적 성격을 가지므로 **시행일 설정이 필수적이지는 않음. 다만** 시행일을 결정할 경우 해당 지침의 적용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존재함
- (가능한 대안) 두 가지 대안 중 선택 가능: ①시행일을 자료 개발 시점에 함께 설정, ②의견수렴을 거쳐 미래에 시행일을 설정
 - ①시행일을 **현시점에 설정**할 경우, IFRS S1·S2에 대한 이행 노력, 자연 관련 보고가 초기 단계인 점, 지속가능성 보고의 변화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것보다 더 긴 이행기간을 허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②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일을 **미래에 결정**하는 경우, 기업이 자연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면서도, 미래에 자료의 적용을 요구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게 됨

③ 접근법별 장점 및 우려사항 비교

- (개요) 스테프는 접근법*별 장단점을 분석하였으며, 모든 접근법에 대해 기준 개발과 동일한 절차(의견수렴 등)가 요구되고 접근법과 무관하게 제

안되는 공시 요구사항 및 지침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함

<*접근법별 개요>

구분	① IFRS S1 개정	② IFRS S2 개정	③ 신규 독립 기준서 제정	④ IFRS 실무서 개발
자료의 구조	IFRS S1 개정 및/또는 부록 신설 (적용 지침으로 포함)	IFRS S2 개정 및/또는 부록 신설 (적용 지침으로 포함)	IFRS S1·S2와 중복 없는 독립 기준서	ISSB 기준서와 함께 활용되는 독립 문서
자료의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상 의무이나, ISSB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만약 비의무일 경우, 관할권이 자국 내 의무화 여부를 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상 비의무 다만, 관할권에서 자국 내 의무화 여부를 정할 수 있음
시행일	ISSB 결정			필요시 ISSB가 결정
준수문구 사용을 위해 적용 요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SB가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준수가 요구됨 ISSB는 긴 이행 기간을 제공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수가 요구되지 않음 다만, 관할권에서 의무화를 정할 수 있음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용 시, 실무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했을 때만 준수문구 사용 가능

○ ‘접근법 ①: IFRS S1 개정’의 장점 및 우려사항

구분	접근법 ① IFRS S1 개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S1이 이미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연 관련 요구사항을 IFRS S1에 통합할 경우 다음이 가능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S1을 중심으로, 다른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와 함께 자연을 통합적으로 고려 -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과 분리되어 고려되는 분절화 위험 감소 - 기준서 간 중복 감소 기업이 이미 적용 중인 기준서 내에 위치하므로, 자연 관련 적용지침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이 높음
우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S1 개정이 필요하여 자연 관련 지침에 대한 지위(의무 또는 자발) 및 시행일 결정이 수반되며, 이는 IFRS S1을 이행 중인 관할권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존재함 관할권이 해당 개정 사항의 채택 여부 및 적용 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관할권 절

구분	접근법 ① IFRS S1 개정
	<p>차에 따라 관할권별로 서로 다른 IFRS S1 버전을 사용하게 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된 기준서가 제정된 '기후' 대비 자연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될 우려 존재함

○ '접근법 ②: IFRS S2 개정' 의 장점 및 우려사항

구분	접근법 ② IFRS S2 개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가 강조되어 분절화된 보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음 이는 기업이 기후 및 자연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적용해야 할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됨
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관련 정보 중에는 기후와 무관하거나 더 광범위한 위험 및 기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IFRS S2의 적용 범위(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불일치가 발생함 접근법 ①과 유사하게 IFRS S2 이행 혼란 우려 존재함 - 예: 관할권별로 서로 다른 IFRS S2 버전 사용

○ '접근법 ③: 신규 독립 ISSB 기준서 제정' 의 장점 및 우려사항

구분	접근법 ③ 신규 독립 ISSB 기준서 제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됨 IFRS S2의 구조를 따를 경우, 이미 IFRS S2에 익숙한 이해관계자는 해당 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음 독립 ISSB 기준서에 포함된 내용은 IFRS S1 및 IFRS S2의 부록으로서 포함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가시성을 지닐 것임
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분절되어 제공됨에 따라, 자연 관련 공시가 분리된 보고서 형태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음 기업 및 관할권이 새로운 기준서의 이행을 평가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IFRS S1 및 IFRS S2의 이행 및 도입에 대한 집중이 분산될 우려가 있음(단, 이러한 우려는 해당 자료의 지위 및 시행일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새로운 기준과 IFRS S1, IFRS S2, SASB 기준 및 IFRS S2 적용을 위한 산업별 지침 간 관계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향후 주제별 기준서의 구조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이해관계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ISSB는 기준서 구조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접근법 ④: IFRS 실무서 개발' 의 장점 및 우려사항

구분	접근법 ④ IFRS 실무서 개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서는 ISSB 기준의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아 IFRS S1 및 IFRS S2의

구분	접근법 ④ IFRS 실무서 개발
	<p>이행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서는 기준서는 아니나, ISSB의 정규절차를 거치므로 다른 접근법과 동일하게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독립된 문서이므로 IFRS S1 및 IFRS S2 내 부록으로 개발되는 것보다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높음 • 문서 내 요구사항의 적용이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음 • 자연 관련 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포함함으로써, 자연을 독립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함 • IFRS S1 및 IFRS S2 외부에 위치함으로써, 두 기준서 모두와의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음 • IFRS 회계기준서 사용자에게 익숙한 형태임 <p>- 관할 당국 및 규제기관도 실무서의 비의무적 지위를 잘 인지하고 있음</p> <p>- 이는 각 관할권이 자국 상황에 맞춰 자연 관련 공시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p>
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서는 ISSB 기준의 일부가 아니므로, 비교가능성 공시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 당국 등이 실무서의 적용을 장려하거나 의무화 해야 함 • IFRS S1 및 IFRS S2와 별도의 문서이므로, 접근법 ③과 유사하게 분절화된 보고, 문서 간 관계 혼란, 지위에 대한 혼란 등의 위험이 존재함 • 자연 관련 정보가 기후 관련 정보보다 덜 중요하게 인식될 위험이 존재함

□ **(스태프 권고안)** 스태프는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 및 지침을 IFRS 실무서 형식으로 개발하되, 공개초안에 이해관계자가 대안적 기준제정 형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 **(스태프 권고 이유)** 다음의 이유로 ‘접근법 ④: IFRS 실무서 개발’을 권고함

- 자연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가시성과 존재감을 제공할 수 있음
- IFRS S1·S2를 변화 없이 유지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IFRS·S2에 대한 이행 및 도입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ISSB 기준서 체계 검토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함
- 실무서에 대한 공개초안 발표를 통해 기준 설정 형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향후 재심의 시 적절한 형식을 결정할 때 활

용할 수 있음

- 신규 주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실무서 형식으로 시작하더라도, 향후 ISSB 기준서(독립 기준서 또는 다른 형식)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함

나. 회의결과

AP3A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위치 기반 정보

- (위치 개념 중요성)** 다수의 위원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본질적으로 위치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위치 정보의 중요성에 동의함
 - 특히 ‘위치’는 사업장 수준에 한정되지 않고, 생태학적 경계 및 기업의 영향 범위 등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세분화 및 비례성)** 다수의 위원은 위치 정보의 세분화 및 통합 수준은 기업이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 또한 복잡한 가치사슬 및 공급업체 위치 정보 등을 고려할 때, 보고일에 이용가능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공시하는 비례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됨
- (방법론 및 기준 간 연계)** 일부 위원은 TNFD LEAP 접근법 등 특정 평가 프로세스를 기준에 직접 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 아울러 공시는 IFRS S1 및 S2와 명확히 연계되어야 하며, 지표는 전략, 회복탄력성 및 위험관리 맥락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에 대한 ISSB의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순번	의결 사항	의결 결과	
1	기업의 자산 및 사업활동의 위치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는데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추가 지침을 제공	가결	전원동의
2	핵심요소 전반에 걸쳐 위치 기반 정보 공시에 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해당 지침에 적절한 세분화 및 통합 수준 판단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3	①자연 관련 위험에 취약하거나, ②자연 관련 기회와 정합되는 자		

순번	의결 사항	의결 결과	
	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비율을 공시하도록 요구		
4	3의 공시에 대해 비례성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기업이 보고일 현재 이용가능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활용		

AP3B, 3C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맥락에서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정보

- (지침 개발 방향)** 다수의 위원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고려하여,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 지침을 개발하는 데 동의함
 - 해당 지침은 IFRS S1을 기반으로 하되, TNFD 개념을 반영하는 방향임
- (이해관계자 범주 및 공시)** 다수의 위원은 TNFD 기반 이해관계자 범주를 지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동의함
 - 또한 정보가 중요한 경우 기업이 공시 대상 이해관계자 범주를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승인됨
- (SASB 기준 개선과의 연계)** 모든 위원이 자연 관련 공시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결과를 SASB 기준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데 동의함
 - 이를 통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됨
- (의결사항)** 다음의 의결 사항에 대한 ISSB의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순번	의결 사항	의결 결과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추가 지침 마련 1) 자연과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설명 2) 상호작용 및 참여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발생과 대응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여 위험 및 기회의 식별 및 중요성 판단을 지원 3) 투자자 정보 수요 충족을 위해 IFRS S1의 전략, 위험관리, 거버넌스 및 연계된 정보 관련 요구사항과 SASB 기준 지표의 적용 방식 설명	가결	2명 반대*1

순번	의결 사항	의결 결과	
	4) 산업 및 관할권별 사례를 포함한 공시 적용 사례 제시		
2	지침은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도록 하며, 해당 범주는 TNF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설명	가결	3명 반대*2
3	관련 정보가 중요한 경우 기업이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 유형을 식별하도록 요구	가결	3명 반대*3
4	ISSB가 SASB 기준 개선 과정에서 자연 관련 기준제정 프로젝트 결과를 반영하는 것 특히 산업 범위, 포함되는 이해관계자 유형,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등에 대한 검토	가결	전원동의

*1 Jeffrey Hales, Verity Chegar 위원

*2 Jeffrey Hales, Verity Chegar, Richard Barker 위원

*3 Jeffrey Hales, Verity Chegar, Elizabeth Seeger 위원

AP3D 기준제정 형식(Form of Standard-setting)

- (자연 관련 공시 개발 형태) 위원들은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IFRS 실무서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전원 동의함
 - (단일 기준서 방식의 한계) 자연 관련 주제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하나의 의무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른 기준제정기구들 역시 이미 복수의 주제별 자연 기준을 활용하고 있음*을 언급함
 - * 예: EFRAG의 ESRS에는 자연과 관련하여 4가지 기준서가 존재함(E2 오염, E3 물 및 해양 자원, E4 생물다양성과 에코시스템, E5 자원사용 및 순환 경제)
 -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모든 내용을 단일의 ISSB ‘자연 기준’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기존 기준과의 관계) ISSB 기존 기준서(IFRS S1·S2)는 이미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므로,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역시 공시 대상에 포함됨
 - (실무서의 성격) 실무서는 단순한 교육자료가 아닌, 완전한 정규절차의 적용을 받으며 IFRS S1에 명확성과 요구사항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기준제정에 해당함을 강조함
 - (실무서 선택 사유) ISSB는 다음 사유에서 실무서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

이 현 상황에서 비례적이고 적절한 다음 단계라고 판단함

- 자연 관련 공시의 중요성을 명확히 알리고, 현재의 고품질 이행을 지원함
- 이에 따라 기업 및 관할권이 기존 ISSB 기준을 이행·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향후 자연 관련 공시가 기준서 형태의 요구사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접근법임

□ (향후 계획) ISSB는 '26.10월에 실무서 공개초안을 공개할 예정임

- (의견 수렴 대상) 공개초안을 통해 구체적인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IFRS 실무서 형태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할 예정임

□ (의결사항) 다음의 의결 사항에 대한 ISSB의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순번	의결 사항	의결 결과	
1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 및 지침을 IFRS 실무서 형태로 개발 여부	가결	전원동의
2	공개초안에 대안적 기준 설정 형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질문 포함 여부		

2 IFRS S1 및 IFRS S2 이행 지원

가. 안건 주요내용

□ (목적) ' 26.3.26일 개최된 TIG* 회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

- ISSB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이 요구되지 않음

□ (TIG* 개요) TIG는 기업이 IFRS S1 및 IFRS S2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제기 되는 실무적 질문을 공개 포럼 형태로 논의하는 기구임

* [참고] 2026년 제3회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보고안건 4호](#)에서 TIG의 역할 및 주요 논의동향이 보고되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조할 수 있음

- (역할) TIG는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음

- ① 기준 이행에 대한 이해관계자 질문을 수렴, 분석 및 논의
- ② ISSB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이해관계자들이 기준 이행 실무에 대해 상호 학습할 수 있는 공개 논의 장을 제공

○ (심의 기준) TIG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질문을 논의 대상으로 함

- ① IFRS S1 또는 S2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
- ② 실무상 다양한 해석(diversity in practice)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
- ③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관련성이 있을 것

□ ('26년 제1차 회의 결과) ' 26.3.26일 TIG 회의에서는 두 안건을 논의함

* [참고] 기준원 차원에서 정리한 상세 회의결과는 ['26.3월 TIG 회의결과](#)를 참조할 수 있음

① (AP1) 이행 질의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질문 보고

구분	내용
질의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따라서 모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준비하는 기업)에 관한 IFRS S1 문단 B38의 예시와 관련하여, 이러한 기업에 ISSB 기준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인지
스태프 의견	□ 아님 . ISSB 기준은 어떤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직접 정하지 않으며, ISSB 기준을 적용하여 공시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는 각국의 법규나 규제당국 등 외부 기관이 결정함 ○ ISSB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관련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함(IFRS S1 문단 20) - 따라서 기업이 ISSB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나, 규제당국 등의 요구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 공시는 관련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

○ (TIG 위원 논의) TIG 위원들은 해당 질문 및 스태프 분석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② (AP2) IFRS S2 적용 시 생물기원 배출량(biogenic emissions) 처리

구분	내용
질의	□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 2004년)에 따르면, 바이오매스/바이오연료 연소로 인한 CO ₂ 배출량(이하 '생물기원 배출량')은 Scope 1-2-3 GHG 배출량과 별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IFRS S2 적용 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스태프	(쟁점1) IFRS S2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이 생물기원 배출량에

구분	내용
의견	<p><u>적용되는지?</u></p> <p>□ 그렇함. 생물기원 배출량은 IFRS S2가 정의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GHG 배출량에 해당하며, Scope 1·2·3 GHG 배출량에 포함됨</p> <p>(쟁점2) IFRS S2가 생물기원 배출량을 별도로 측정하고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지?</p> <p>□ 그렇지 않음. IFRS S2는 생물기원 배출량을 여타 GHG 배출량과 별도로 보고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나, IFRS S1의 통합·세분화 요구사항(문단 B29~B30)을 적용한 결과로 생물기원 배출량을 별도 공시하게 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S2는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을 측정 방법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며(IFRS S2 문단 29(a)(ii)),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의 공시 요구사항은 IFRS S2 적용 시 적용되지 않음 ○ IFRS S2는 GHG Protocol 기업 기준과 충돌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IFRS S2 문단 B23)

○ (TIG 위원 논의) TIG 위원들은 스태프 견해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IFRS S2 요구사항 적용과 관련한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함

- 스태프 의견에 대한 논의

구분	내용
TIG 논의	<p>(쟁점1) 생물기원 배출량은 IFRS S2에서 정의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GHG 배출량에 해당하며, IFRS S2상 GHG 배출량 공시 요구사항이 생물기원 배출량에도 적용된다는 스태프 견해에 동의함</p> <p>(쟁점2) IFRS S2가 생물기원 배출량을 Scope 1·2·3과 별도로 측정·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스태프 견해에 동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일부 TIG 위원은 이것이 생물기원 배출량을 Scope 1·2·3과 별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ESRs의 요구사항과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함 <p>□ (통합·세분화 원칙의 관련성) IFRS S1 문단 B29-30의 통합 및 세분화 요구사항의 관련성을 강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기원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세분화하여 생물기원 배출량이 식별되도록 해야 할 수 있음 <p>□ (정성적 정보의 유용성) 생물기원 배출량의 규모를 공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 정보를 제공하면, 주요 이용자가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적 정보의 예)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구분	내용
	<p>전략에 대한 정보, 기후 관련 목표 대비 기업의 진척상황에 대한 정보 등</p> <p>□ (예시 추가 제안) AP2에 제시된 예시(기업의 바이오에너지 사용이 전략적 목표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가 유용하며, 생물기원 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의 예시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p>

- (실무적 시사점) TIG 위원들은 생물기원 배출량 또는 기업의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 공시와 관련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함

구분	내용
TIG 논의	<p>□ (투명성, 비교가능성 제고) GHG 배출량 공시 내에서 생물기원 배출량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여야함</p> <p>□ (ISSB 기준 및 ESRS 동시 적용 기업의 대응) ISSB 기준과 ESRS를 모두 적용하는 기업은 생물기원 배출량과 관련하여 두 기준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프로세스·공시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예시 방안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단일 보고서 내에 ISSB 기준과 ESRS에 따른 스코프 1, 2, 3 배출량을 각각 제시하고, 어떤 값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표시 - 관련성 있는 경우, 생물기원 배출량을 두 측정값 간 차이를 설명하는 조정 항목으로 제시

- **(향후 일정)** 차기 TIG 회의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임

나. 회의결과

- ISSB 위원들은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음

III 향후 일정

- **(ISSB 5월 회의)** ‘26.5월 ISSB 회의에서는 ①신규 기준제정 프로젝트, ②SASB 기준 개선에 대해 논의 예정

표 1: TNFD 용어집 중 '위치' 관련 용어

위치 기반 정보 관련 용어	TNFD 용어집 정의	기타 TNFD 자료 발취
영향 범위(Area of influence)	<p>프로젝트의 영향 범위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물리적 경계보다 더 넓으며, 프로젝트가 자연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 및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범위를 포함한다.</p>	<p>조직은 전환 계획 이행의 추진, 측정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임팩트 동인, 자연 상태 및 생태계 서비스 지표와 목표에 관한 정보를 공시한다.</p>
우선순위 위치 (Priority locations)	<p>우선순위 위치는 다음과 같은 위치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위치(Material locations): 기업이 직접 운영 및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서 자연 관련 의존성 및 임팩트, 위험 및 기회를 중요하다고 식별한 위치 및/또는 • 민감한 위치(Sensitive locations): 기업의 직접 운영(가능한 경우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사슬 포함)에서 자산 및/또는 활동이 다음과 같은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 ✓ 생태계 완전성이 높은 위치; ✓ 생태계 완전성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는 위치; ✓ 물리적 물(water) 위험이 높은 위치; ✓ 생태계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포함) 	<p>기업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일부 범위에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리적 위치에서의 의존성 및 임팩트가 포함될 수 있다(예: 불법 벌목 또는 불법 남획(overfishing)에 기여하는 경우).</p> <p>이러한 민감 위치는 기업이 기존의 표준 위험관리 프로세스에서 아직 포착하지 못했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위험(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 모두)과 기회에 노출되게 할 수 있다.</p> <p>예를 들어, 생태계 완전성이 빠르게 저하되는 위치는 높은 수준의 시스템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높은 위치는 평판 또는 법적 책임과 관련된 위험이 높을 수 있다.</p>

표 2: 본 안건에서 참조된 TNFD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핵심 글로벌 공시 지표

Metrics and Targets A 권고사항 발취 [emphasis added]	지표 번호	기타 TNFD 자료 발취
<p>A. 기업은 전략 및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일관되게, 중요한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를 공시하여야 한다.</p> <p>기업은 Strategy A에서 설명된 중요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및 측정치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보고 대상인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되는 지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p>	C7.0	자연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하다고 평가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의 가치 (총액 및 전체 대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속서 1(Annex 1)에 제시된 모든 핵심 글로벌 및 핵심 산업별 (core sector) 위험 및 기회 지표를 기업 수준에서 공시할 것 필요에 따라 TNFD 부속서 2(Annex 2)에 제시된 추가 공시 지표 및 측정치와 기업 자체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Strategy A에서 설명된 위험 및 기회의 규모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예: 사업장, 제품, 서비스, 위치 또는 기업 수준)에서 기타 관련 지표를 공시할 것 	C7.1	자연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하다고 평가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의 가치(총액 및 전체 대비 비율)

- 스태프는 상호운용성 관점에서, 자연 관련 기준에서 위치 기반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ESRS 공개초안 및 GRI 기준을 검토함

ESRS — 위치 관련 요구사항

- ESRS 1 일반 요구사항은 지리적 맥락에서 부정적 임팩트 발생 요인을 설명하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 평가를 위해 LEAP 접근법의 초기 단계 활용을 참고하도록 제시함
 - 자연 관련 ESRS 공개초안은 위치 특수성과 세분화 수준을 핵심 고려사항으로 제시하되, 특정 수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세분화 시점 및 방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함
 - 특히 ESRS E3(물) 및 E4(생물다양성) 기준에서는 사업장 위치,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 물 스트레스 지역 내 물 사용량 등의 위치 기반 공시를 요구함
 - 또한 ESRS는 ‘geography’ 와 ‘location’ 을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통합(예: 국가 단위)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GRI 기준 — 위치 관련 요구사항

- GRI 기준은 기업이 다양한 위치에서 운영되는 경우, 각 위치적 맥락을 반영한 임팩트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주요 자연 관련 기준에서 다음과 같은 위치 특정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함
 - (GRI 101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임팩트를 미치는 사업장 중심의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위치하거나 인접해 있는지 공시하도록 요구함
 - (GRI 303 물 및 폐수) 물 스트레스 지역 관련 지표 공시를 요구하며, 집수지역(catchment) 단위 등 일정 수준의 공간적 세분화를 요구함
 - (GRI 14 광업 등) 자연 관련 영향에 대해 사업장 수준(site-level)의 공시를 요구함

붙임 3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 정의

사회/이해관계자 집단	설명/정의(TNFD 권고안 기준)	주요 출처
<p>원주민 (Indigenous Peoples)</p>	<p>국제법상 공식적으로 채택된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엄격한 정의는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유엔은 Martinez Cobo 연구에서 제시된 작업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원주민 지역사회, 민족 및 국가는, 해당 영토에서 발전한 침입 이전 및 식민지화 이전 사회와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며, 현재 해당 영토(또는 그 일부)에 존재하는 다른 사회 집단과 자신들을 구별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현재 사회 내 비지배적 집단을 형성하며, 고유의 문화적 양식, 사회 제도 및 법체계에 따라 자신들의 지속적 존재의 기반으로 서 조상 대대로의 영토와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발전시키고 미래 세대에 전달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또한 원주민 개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스스로를 원주민으로 인식하는 자기 정체성(집단 의식)에 기반하여 해당 집단에 속하며, 해당 집단으로부터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자(집단의 수용). 이는 외부 간섭 없이 공동체가 구성원 자격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와 권한을 보장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69호에 따르면, 원주민은 다음과 같은 인구 집단의 후손을 의미한다. “해당 국가 또는 지리적 지역이 정복되거나 식민지화되었거나 현재의 국가 경계가 설정될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집단”이며, “자신들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 제도를 일부 또는 전부 유지하고 있는 집단”</p>	<p>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2013),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이행 매뉴얼</p>
<p>지역사회 (Local Communities)</p>	<p>‘지역사회(Local Communities)’라는 용어는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j)에 제시된 특성을 기반으로 사용되며,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적 생활양식을 구현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에 기반하여 작업 정의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필수적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다양한 생태계의 농촌 및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성 중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 [...]</p>	<p>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제11차 회의 결정문 XI/14, 제8조(j) 및 관련 조항</p>

사회/이해관계자 집단	설명/정의(TNFD 권고안 기준)	주요 출처
<p style="text-align: center;">이해관계자 (Affected stakeholders)</p>	<p>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 및 가치사슬—자연 관련 의존성 및 임팩트, 위험 및/또는 기회와 이에 대한 대응을 포함—에 의해 이미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p> <p>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는 기업의 운영 또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사회부터, 자연 손실(예: 이동성 종의 감소) 또는 기업이 발생시키는 임팩트 동인(예: 수질 또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원거리 지역사회까지 다양할 수 있다.</p> <p>또한 이러한 지역사회에는 토지, 영토, 자원, 문화, 전통지식 및 자치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보유한 원주민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의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수행되기 전에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p>	<p>World Economic Forum ('22.5월), Engaging Affected Stakeholders: The Emerging Duties of Board Members (Global Future Council on Human Rights 보고서 기반 수정)</p>

- 스태프는 원주민,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참여가 기업의 전망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자 정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연구 및 아웃리치를 수행함
 - (연구) 문헌조사(desk research)를 수행하고, Shift와 협력한 연구를 검토하여 자연 관련 임팩트와 연계된 지역사회 참여의 재무적 효과를 학술연구·보고서·뉴스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함
 - 약 1,200건 사례 중 약 800건에서 재무적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212건은 정량적 정보(금액 등)를 포함함
 - 최종 결과는 사례 데이터베이스, 산업·지역별 분석, 사례연구(15~20건)를 포함한 보고서로 '26년 5월 중 제시될 예정임
 - (아웃리치) 26.2월 및 3월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성 자문위원회(SCC), ISSB 투자자 자문그룹(IIAG), 지속가능성 기준 자문포럼(SSAF)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 IIAG, 지속가능성 참조그룹(SRG), SSAF 및 TNFD 포럼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75건(투자자 55건 포함)의 응답을 확보함